

산업재해 업무 처리 매뉴얼

◆ 공공사업의 **사업주(정부,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 수급자**이며, **법 위반 시 행·사법조치 대상**임을 기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심과 주의 필요**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의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고 사이트**

- 산업안전관리공단 www.kosha.or.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성동지사 ☎ 460-3573 / FAX 0502-460-3100)

1 산업재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1. 업무상 사고: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2. 업무상 질병: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에 걸리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37조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산업재해 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주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 지방고용노동관서(성동구 관할: 서울동부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함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전화, 팩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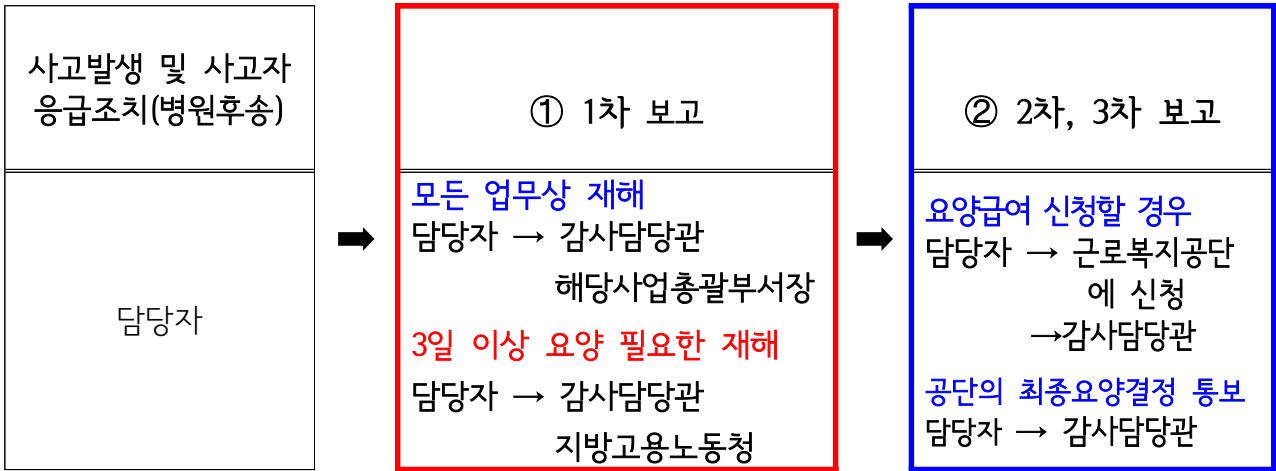
✓ 중대재해란?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재 발생 시 보고 체계

1. 처리절차



2. 보고체계

① 1차 보고 :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사고

- 사고 현장 담당자는 신속하게 ‘해당 사업 총괄 부서장’ 및 ‘감사담당관’에 보고
- 보고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보고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NO. 68 사고경위조사보고서 내부결재(감사담당관 인관팀 협조)
- 첨부서류: 조사자 현장 출장보고서(현장사진), 재발방지계획서, 의사소견서(진단서),
※ 재발방지계획 수립: 해당 사업 총괄부서 담당은 사고 현장 담당자와 함께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수립
※ 1차 보고 기한 내 미보고 시: 담당자 조치

② 2차 · 3차 보고

- 보고시기
 (2차)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 총괄 부서에서 처리
 (3차)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통보(승인 또는 미승인) 받은 뒤
- 보고방법: 일반 기안문 형식
- 첨부서류: 사고경위조사보고서(1차 보고), 요양신청서, 결정통보서 사본,
 재발방지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 전자파일(스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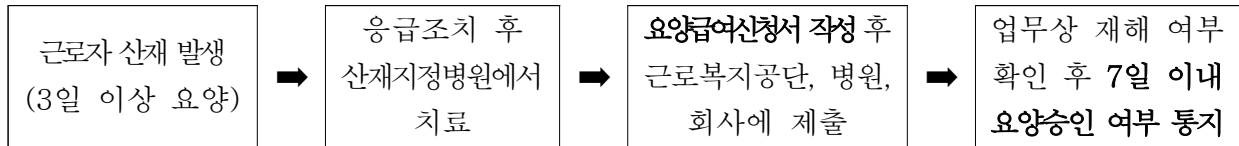
【붙임 1】 *재해방지계획서 및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산업재해 보험금 청구 절차

◆ 청구의 원칙

- 산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측이 아니라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청 가능

◆ 산재 요양 신청 절차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① 신청서 작성 (산재 지정의료기관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신청 가능)
각 병원에 비치된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작성 (병원 측 소견서 첨부)
 - 재해자 인적사항, 목격자, 사고경위 등 기재 후
 - 사업주(성동구청)와 재해자(사고 당사자) 날인
- ②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성동지사)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의료기관이 토털서비스 통해 위임 접수도 가능(위임란에 기재 요망)

【붙임 2】 산업재해 처리절차 참조

【붙임 3】 성동구 소재 산재 지정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확인)

4 산업재해 발생 기록 · 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류 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산업재해 발생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 서류(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발생방지계획 포함)	산업안전 보건법 제10조 제1항
		3일 이상 요양재해	② <u>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재발방지계획서*</u> 첨부하여 보존	
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 발암성 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산업안전 보건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① 안전보건교육일지 ② 교육참석자 명단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5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사무직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8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직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	2시간 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직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생산직근로자	16시간 이상	① 공통교육 ② 개별내용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 근로자 채용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사항 포함시킬 것

○ 교육 일지 작성 및 교육 참석자 대장 관리

[붙임 1]

재해 재발방지계획

1. 사업장의 개요

- (1) 사업장명 : 00과 0000사업
(2) 소재지 :
(3) 산재번호 : 910-00-*****0 (4) 담당자(전화번호) :
(5) 상시 근로자수 : 명 (6) 업종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 근로자의 인적사항.

- (1) 성명(생년월일/성별) : 홍길동 (74. 5. 1 / 남)
(2) 주소 : 성동구 행당동 00-0 (연락처:)
(3) 직종 : (4) 채용일 :

3. 재해발생 개요

- (1) 일시 : 2013. 10. 10. 09:00
(2) 장소 :
(3) 상병명 : 골절, 삐임, 찰림, 부딪힘 등
(4) 휴업예정일수 : 15일

4. 재해발생경위 및 원인

- (1) 경위 :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2) 원인 :

5. 재해 재발방지 대책

-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방지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 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제외)		⑥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기재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 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 정 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 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 상 해 종 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⑱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⑱ 재해 발생 개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⑲ 재해 발생 원인 왜					

IV. ⑳재발방 지 계획					
---------------------	--	--	--	--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 성 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⑭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직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⑱ 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어디서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누가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무엇을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기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왜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중·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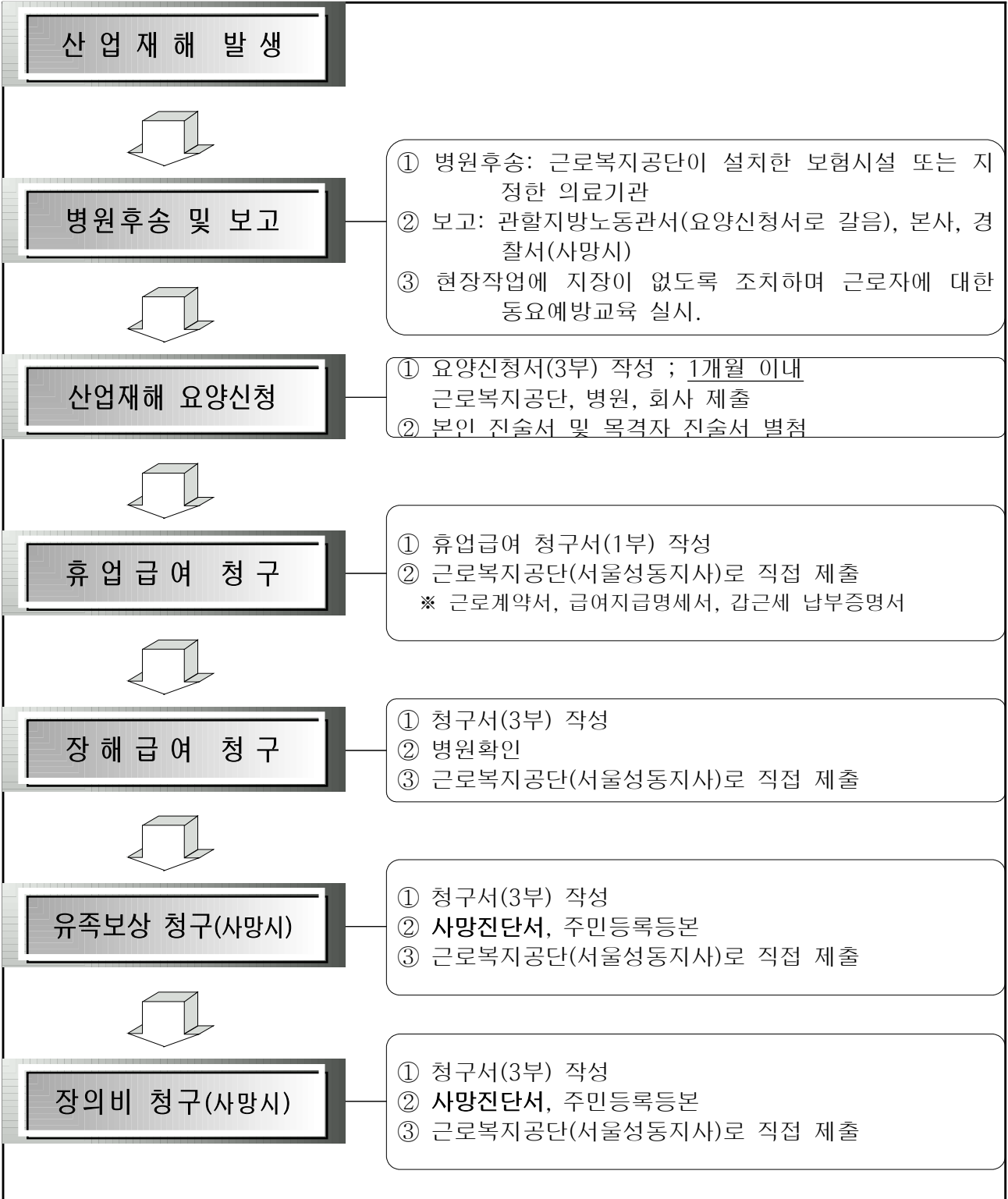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산업재해 처리절차

※ 근로복지공단(성동지사) TEL: 02) 460-3573 / FAX: 02)0502-460-3100



[붙임 3]

성동구 소재 산재 지정 의료기관 현황 (2014. 12월 현재)

지 역	병 원 명	전 화 번 호
금호동1가	금호정형외과의원	2291-7674
	가톨릭정형외과의원	2298-8855
금호동2가	예인한의원	2232-2205
	서울중앙병원	2233-3993
금호동3가	연세재활의학과의원	2232-7613
	장일성정형외과의원	2238-0005
금호동4가	서울신경외과의원	2282-3119
도선동	서울마이크로병원	2281-0010
마장동	파티마의원	2292-3377
	현대서울의원	2292-8275
	삼성서울의원	-
성수1가1동	연세정형외과의원	465-9119
성수2가1동	(사)한국학교보건협회 참사랑의원	464-9988
	바른몸 정형외과의원	497-7755
	미플랜치과	461-8228
성수2가3동	서울 프라임병원	464-2700
송정동	제인병원	3408-2210
용답동	유창길한의원	2242-7575
	시온요양병원	3394-6211
하왕십리	동인병원	2293-1121
행당동	한양대학교병원	2290-9072
	한누리한의원	2296-7510
	연세병원	2293-7582
	박형근 정형외과	2299-1337
	여봉구 정형외과	2281-3875

※ 산재 지정 의료기관 문의: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
(성동지사 ☎ 460-3573)